

성동구 치매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(안)

성동구보건소 · 성동구치매지원센터 · SH공사성동권역주거복지센터는 성동구 어르신의 치매예방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성동구 내 SH공사성동권역주거복지센터 관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예방을 위한 연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,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성동구 치매 취약계층에 대한 상호 치매관리서비스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
(예: 단지 내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부착, 안내방송, 검진장소 협조 등)
2.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시 상호 협조
 - 가. 치매조기검진 협조
 - 나. 치매관련 정보제공 및 자원 연계
 - 다. 치매 치료비지원 등 집중 관리
 - 라. 그 밖의 치매 취약계층 치매예방 및 검진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의무사항) 업무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상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 원칙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.

제4조(비밀보장의 의무) 본 협약의 이행에 따른 대상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, 당사자의 사정으로 업무협약의 해약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.

제7조(효력)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기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4월 29일



성 동 구 보 건 소 장 김경희



성동구치매지원센터장 김승현



성동권역주거복지센터장 손명호

*기관명은 가나다순임.